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기영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 번호 | 1091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발 의 자 : 한기영 의원 (1명)

찬 성 자 : 강동길, 김상진, 김인호, 김태호,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정선,
이동현, 이현찬, 추승우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재능기부활동으로써, 현행 마을세무사의 자격요건을 '세무사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자격요건을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로 완화하여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마을세무사의 자격요건 중 “세무사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로 개정함(안 제4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세무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위촉 등)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사 활동 경력이 <u>3년 이상</u> <u>고 개업 중인 세무사</u> 중에서 필 요한 인원을 시장이 위촉한다.</p> <p>② (생 략)</p> | <p>제4조(위촉 등) ① ----- ----- <u>세무사법</u> <u>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u> <u>세무사</u> ----- -----.</p> <p>② (현행과 같음)</p> |